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8
----------	------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문상모 의원(찬성자 13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4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8일
-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상모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조직담당관-7789, 2016.6.29.)’에 따른 관광체육국 신설 및 담당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부단장 및 간사를 수정하고
-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민간협력담당관-3885, 2016.3.30.)’에 따라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16년도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존치시키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1) 경기부의 부단장은 체육정책과장으로, 간사는 체육정책과로 함(안 제3조제3항).
- (2)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종료시 위촉을 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8항).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2)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15년 7월 1일 관광체육국이 기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른 담당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부단장 및 간사를 수정하고, '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에 따라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16년도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체육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검토의견

- 관광체육국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실행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에 따라 2015년 7월1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분리·신설 되었음(참고자료1-조직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내 체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체육진흥과(1과 1사업소)’를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2과 7팀 1사업소)로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며, 기구·정원규정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15.5.14.) 했으나, 동 조례의 제3조제3항 중 경기부의 부단장(체육진흥과장 → 체육정책과장)과 간사(체육진흥과 → 체육정책과)의 수정이 누락된 것을 개정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1), 제14조2)에 따라 민관협력담당관실에서 '15년도 위원회 전수 조사한 결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16년도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운영활성화를 위해 집중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위원회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회의 실적이 저조한 다수의 위원회가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 집행을 비효율적으로 한다며 부실위원회 양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및 언론 비판보도가 있었음(매일경제, '17.1.15.- 참고자료2).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경기부의 설치·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

-
- 1)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음

여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경기부의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매년 12월 각 기능에 따라 1회 회의가 열려 개최실적(참고자료3)은 저조하나 제도적 절차 심의 등을 위해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민관협력담당관-3885, 2016.3.30.)의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여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예산과 행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됨.

【정비기준】

○ 조례상 설치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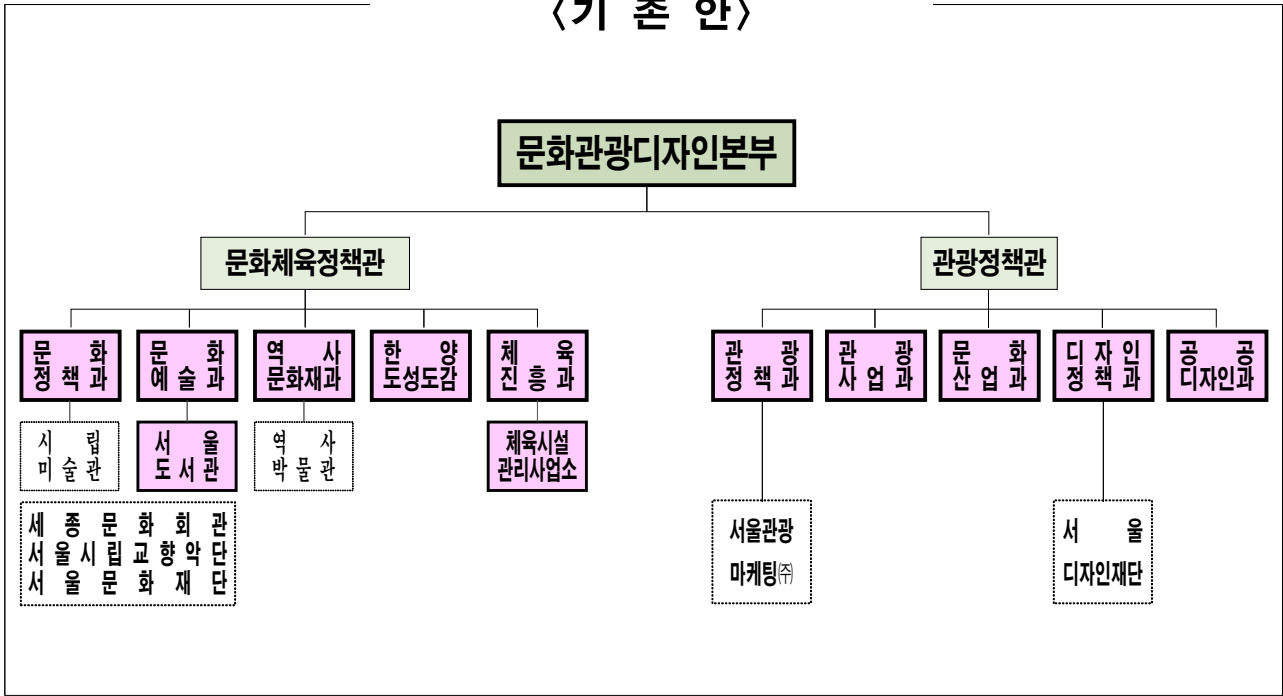
- 폐 지 : 법령개정 등 위원회 설치·운영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 통·폐합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비상설화 :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법령상 설치 위원회

- 비상설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 ※ 법령 개정 시까지 위원회의 심의안건 추가 발굴 등 심의·자문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연 4회 이상)

<참고자료1 조직도 >

<기 존 안>



<개 편 안>



〈참고자료2 보도자료〉

서울시 위원회 26%가 연중회의 1번 이하 ‘부실위원회’

(매일경제, 2017.01.15.)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후 생긴 서울시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 동안 회의가 전혀 없거나 1번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실위원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박 시장 취임 후 신설된 위원회 49개 중 운영 실적이 부진해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된 부실위원회는 전체의 26.5%인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이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이하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를 집중관리위원회로 매년 초 지정한 후 회의개최실적, 예산집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은 부실한데도 위원회 수 자체는 박 시장 취임 후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의 위원회 수는 167개에 이르는데, 이 중 38.3%인 64개가 박 시장 취임 후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이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시민 전문가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운영회 수는 지난 2011년 박 시장 취임 당시 103개에서 지난해 167개로 늘어났다.

부실위원회가 양산되면서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쓸데없이 복잡해지고, 시의 예산 집행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운영회를 관리하는 데도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예산 책정을 할 때도 운영회 몫의 예산을 별도로 떼어놓다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위원회 양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부실위원회 정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부실위원회 정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원회 수는 꾸준히 늘어나 왔다. 현재 시 위원회 중 절반

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해체가 불가능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시 조례에 근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각 부서들이 위원회 정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며 방치하고 있고, 위원회 해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회 정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위원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성과가 아니라 구성사실 자체만으로 치적을 홍보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속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위원회 양산에 대해 서울시는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원회 양산이 서울시만의 잘못으로 이뤄진 건 아니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시 운영회 중 절반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노력만으로 부실위원회를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위원회에 배당된 예산이 매년 불용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를 열지 않으면 전혀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회의가 개최될 때도 회의 참가비·심사비 등이 위원회 1인당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3 체육진흥관리위원회 개최 현황(2013년 ~ 2016년)〉

연도	일시	장소	참석인원	심의결과
2013	12.18.	서소문별관 6층 회의실	한문철,문상모,형구암,임형균,김준수,임오경,정환중 등 7명	<p>[시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시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 (경기인 증원 160→162명 2명 증원) - '14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 ('13년 대비 지도자 및 지도자 5%인상)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14.1.1.~2016.12.31.,3년간) <p>[시장애인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시 장애인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2개종목 17명 현행 유지) - '14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 (경기실적 반영으로 7% 인상)
2014	12.22.	본관3층 공용회의실	정현숙,김구현,정창수,김임연,양현미,임오경,형구암,오제성 등 8명	<p>[시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시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 (162→168명) - '15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14년대비 동결) <p>[시장애인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시 장애인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2개종목 17명 현행 유지) - '15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탁구팀 4.6% 인상)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15.1.1.~2016.12.31.,2년간)
2015	12.23.	서소문별관 6층 회의실	김설향,문상모,정창수,김임연,이형삼,김의승,임오경,형구암 등 8명	<p>[시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시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 ('15년도 수준 유지) - '16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선수 이하 연봉 최저임금 상향조정(1,000만원→1,500만원)) -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컬링팀 창단 <p>[시장애인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시 장애인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2개종목 17명 '15년도 수준 유지) - '16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15년도 수준으로 동결) -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컬링팀 창단
2016	12.23.	서소문별관 6층 회의실	김설향,문상모,정창수,이구석,김의승,임오경,형구암 등 7명	<p>[시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시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 (경기종목 수영폐지→테니스 변경), 경기인 편성(174→175명,1명 증원) - '17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16년 수준으로 동결) - 지도자 연령상한제(만60세) 및 평가시스템 도입 <p>[시장애인체육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시 장애인체육회 위탁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3개종목 23명 '16년도 수준 유지) - '17년 경기부 급여 및 수당 기준('16년도 수준으로 동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를 “체육정책과”로 한다.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② (생략)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u>체육진흥과장</u> 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u>체육 진흥과</u>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u>체육정책과장</u> 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u>체육 정책과</u>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u>